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7

제 출 일 : 2026. 10. 2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)

3. 참고사항

○ 출연금액 : 49,224천원

- 산출근거 : 전전년도('25년) 보통세(시세)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0
- 산출내역 : 492,236,363천원 x (1.0 / 10,000) = 49,224천원

○ 사 업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

○ 사업목적 :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*)의 지방세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

* 한국지방세연구원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
- 자치단체 요청 연구과제 수행, 시가표준액 조사 및 연구, 지방세 전문교육, 불복 사건 자문 등 소송사무 지원,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

○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○ 출연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1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출연금	47,469	50,579	57,364	64,938	59,032	48,115
비 율	1.3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2 / 10,000	1.0 / 10,000